	규정	문서번호	TWP-A702	
		제정일자	2010. 03. 01.	
	자체평가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	
		개정번호	8	페이지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10. 03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분	작성	검토					승인
직책	담당	교무학생처장	산학입학처장		사무처장		총장
서명							
일자							




규정

자체평가 규정

문서번호	TWP-A702
제정일자	2010. 03. 01.
개정일자	2023. 02. 28.
개정번호	8
페이지	2/5

개정이력		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0. 11. 10.	- 2차 개정
2	2014. 01. 21.	- 부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3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4	2015. 07. 28.	- 제2조의1(자체평가 지표) 제정 - 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심의사항 개정 - 제8조(자체평가운영팀) 수행 기능 개정
5	2016. 02. 18.	- 제2조의1(자체평가 지표)전문삭제
6	2017. 02. 00	- 자체평가는 정의 개정 - 자체평가의 평가 대상 제정 - 자체평가위원회 대상 개정 - 자체평가업무 담당부서 개정
7	2018. 02. 19.	-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→ 기획처, 입학관리센터 → 입학처 학생처/학생취업처 → 학생취업처 - 전공주임교수 → 학과장 변경
8	2023. 02. 28.	- 평가인증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2	
		제정일자	2010. 03. 01.	
	자체평가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	
		개정번호	8	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자체평가는 객관성, 공정성,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역량 및 대학경영 역량 등을 평가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평가영역) ① 평가영역은 대학발전계획 수립, 평가, 기관평가인증, 대학정보공시 내용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
1. 대학경영과 발전계획
 2.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
 3.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
 4. 학생 및 교직원
 4.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한 영역
- ②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평가지기)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는 년 1회 실시하되 평가지기와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
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, 대학 경영품질 및 교육품질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이 되고,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 2. 자체평가 지표의 선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
 3. 자체평가 지표 결과의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 4.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

	규정		문서번호	TWP-A702
			제정일자	2010. 03. 01.
	자체평가 규정		개정일자	2023. 02. 28.
			개정번호	8

5. 자체평가 지표 결과의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결과의 심의 및 보고)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 환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최종 심의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주관부서) 자체평가의 기획, 운영, 조정, 관리 등의 업무는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한다.

제9조(자체평가운영팀) ① 자체평가의 원활한 실무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운영팀(이하 “T/F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T/F팀은 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하며,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T/F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지표 개발
2. 자체평가 결과 분석
3.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4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④ T/F팀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전공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와 T/F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기타)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2	
		제정일자	2010. 03. 01.	
	자체평가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	
		개정번호	8	페이지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